

감사원 기간제 근로자(영문에디터) 채용 공고

감사원에서는 영어 문서 교정·교열 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4일

감사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영문에디터	1명	○ 영어 문서 교정·교열 업무 ○ 기타 국제회의, 외빈방문, 해외출장 등 국제협력 업무 지원 등	감사원 (서울시 종로구 소재)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 신분 아님)

나. 계약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성적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다. 급여 수준

- 월 3,392천 원 수준[정액급식비(140천 원), 명절휴가비(연 2회, 기본급의 60%), 성과급 등 별도]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보험료는 월보수액에서 차감

라. 근무시간 : 주 5일, 9:00~18:00 근무(1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

3. 응시자격 요건 등

□ 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2007.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및 「감사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감사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영어 통·번역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영어권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한국어, 영어 모두 능통한 자
 - 원어민 수준*의 영어 구사가 가능하며, 격조 높은 문체의 영문 공식 문서 작성 및 감수가 가능한 자
- * 교양있는 원어민에 버금가는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 ※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는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E-7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F 비자(F-2, F-4, F-5, F-6 등 장기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미소지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우대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내용												
경력	▪ 관련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관련 분야】 ① 영어 문서 교정·교열 업무 ② 국제회의, 외빈방원, 해외출장 등 국제협력 업무 - 근무 기간별 차등 우대, 동일기간에 대하여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경우 추가 우대												
자격증	▪ 공익어학점수 자격증 소지자 <table><tr><th>구분</th><th>TOEIC</th><th>TOEFL IBT</th><th>NEW TEPS</th><th>G-TELP (Level II)</th><th>TOPIK</th></tr><tr><td>점수</td><td>870점 이상</td><td>97점 이상</td><td>452점 이상</td><td>88점 이상</td><td>5급 이상</td></tr></table> - 자격증별 중복인정하지 아니함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성적이면서 면접일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 내에 속해있는 성적만 인정	구분	TOEIC	TOEFL IBT	NEW TEPS	G-TELP (Level II)	TOPIK	점수	870점 이상	97점 이상	452점 이상	88점 이상	5급 이상
구분	TOEIC	TOEFL IBT	NEW TEPS	G-TELP (Level II)	TOPIK								
점수	870점 이상	97점 이상	452점 이상	88점 이상	5급 이상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5명)**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의 타당성, 내용의 논리성·독창성·충실성·대인관계·조직구성원으로서의 태도 등을 종합평가
 - 직무연관성 : 관련 분야 근무경력 등을 토대로 경력분야와 예정직무분야(영어 문서 교정·교열 업무 등) 간 적합성·연관성 등 평가
 - 직무수행능력 : 영문 자기소개서 등을 토대로 직무이해도, 직무전문성 등 평가
 - 우대요건 : 관련 분야 근무경력, 공인어학점수
- ⇒ 위 4가지 심사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문 에디팅 심사**(전형일에 과제 부여 및 수행) 및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아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⑤ 업무수행능력
 - (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2025. 10. 14.(화) ~ 2025. 10. 24.(금)
응시번호 통보 (예정)	2025. 10. 29.(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예정)	2025. 11. 7.(금)
면접시험 (예정)	2025. 11. 12.(수)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	2025. 11. 28.(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 전형별 합격여부,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등은 개별통보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0. 14.(화) ~ 2025. 10. 24.(금) 18:00

나. 접수방법 : 1) 전자우편 (제출서류 첨부, syp0707@korea.kr)

2)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0305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가급적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동법 제11조 등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대상 아님

다. 채용문의 :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02-2011-3521)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일 18:00 내 접수분까지,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우편 소인분까지만 접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접수시간을 초과하거나 접수일 전·후 소인분은 인정하지 않으니 유의**

★ **응시번호는 10. 29.(수) 11:00 문자로 개별 통보, 통보받지 못한 경우 위 연락처로 확인**
- 응시번호 미교부·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 및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업무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단순 서류 도착 확인 문의 또는 채용 공고상 기재된 내용의 확인 전화는 자제 바람**

□ 제출서류

- ① 전자우편 제목 : “감사원 영문에디터 지원서(성명)”
- ② 제출서류 제목 : 제출서류 각각 “숫자-제출서류명-성명”
(※ 제출서류 파일명 : 2-응시원서-홍길동, 5-경력증명서(회사명)-홍길동 등)
 - ②번 각각의 파일을 1개로 압축한 후 첨부하여 ①번 제목으로 이메일을 발송
 - 압축파일 제목 : “감사원 영문에디터 지원서(성명)”
 - ‘zip’ 확장자로 압축한 파일을 제출(다른 확장자는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있음)

- ①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소정양식): 【별첨1】
- ②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별첨2】
- ③ 국문 및 영문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별첨3】
- ④ 영어 통·번역 분야 석사학위 증명서 또는 영어권 대학 학사학위 증명서
- ⑤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관련 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 ※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 경력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소속·성명·연락처 명시
 -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 \times (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하나, 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분야 경력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아래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로 보완하여야 함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아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 참조)
 -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③ 소득금액증명서
 -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⑥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병역사항 포함, 주소이력 미포함, 여성도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첨4】

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소정양식): 【별첨5】

7. 유의사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요구 서류 미제출,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문자 메시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 합격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락불능일 경우 서류전형에서 합격하더라도 면접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 채용절차 중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경력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증명서 및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의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마. 경력이나 학위에 대해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 대학 학위에 대해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차.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카. 최종합격자는 채용 예정일부터 근무하여야 합니다. 채용 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타. 전자우편 또는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파기합니다.
- 파.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등기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한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원본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하. 외국인 최종합격자는 합격자발표 이후 여권 및 비자사본 1부,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원 1부(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행한 것에 한함), 사진 1부(반명함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격자발표 이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국적자는 다른 종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안내 예정)
- 거. 외국인 최종합격자가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02-2011-352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성 명	채용예정기관	응시직급 및 분야
	감사원	영문에디터(기간제 근로자)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별첨 1】	
2. 응시원서 【별첨 2】	
3. 국문 및 영문 자기소개서 【별첨 3】	
4. 영어 통·번역 분야 석사학위 증명서 또는 영어권 대학 학사학위 증명서	
5.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관련 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6.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병역사항 포함, 주소이력 미포함, 여성도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첨 4】	
9.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첨 5】	

주 : 제출한 문서는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미제출한 문서는 제출 여부 란에 “X” 표시

【별첨 2】

응 시 원 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응시분야)	기간제 근로자 (영문에디터)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국적

나. 응시 자격				
학 위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3. 우대 사항 (해당되는 부분만 작성)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전임/비전임)	주당 근무시간
	0000부 (◇◇팀)	'18. 2. 14. ~ '20. 2. 13.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9.1.1.~19.7.31.(질병휴직)	영문에디터	영어문서 교정·교열 업무 (전임)	주 40시간
어 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 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흔글”로 작성한 후 서명한 후 스캔하여 제출(※ 전자우편 제출 시 작성한 파일과 스캔본 모두 제출)
2.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3.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생년월일·이메일·연락처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기재하되,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병기 (외국인) 본인 소속 국적명 기재
7.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은 **경력(재직)증명서상의 내용**(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과 **동일**하여야 함(관련 경력을 모두 기재하며, 최근 경력부터 기재)
 -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 직위(급)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
 -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기간과 근무월일수를 모두 기재 ※ 예: 2018. 1. 1. ~ 2020. 11. 9.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며, 근무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경력이 미인정될 수 있으니 유의
8. 기재사항이 많더라도 글자크기, 장평, 표 서식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 내용을 작성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행 추가 등이 가능하나, 1장 이내로 작성
9. 이력서 서식의 파란색 글씨는 예시 문구이므로 작성 방식을 참고한 후 삭제하고,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제출

자 기 소 개 서

※ 아래 문항과 관련하여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국문 3매 이내, 영문 3매 이내)

1. 자신의 성장과정 및 개인특성, 성격(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감사원 영문에디터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
3. 영문에디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만의 강점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특히 영문에디터로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직장 내에서 상급자 또는 하급자와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만의 노하우(know-how)가 있다면 본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 글자크기: 13, 줄간격 18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색: 검정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의 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작 성 자: ○ ○ ○

자격요건 등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감사원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

(서명)

감 사 원 장 귀하

개 인 정보 수 집·이 용 및 제 3 자 제 공 동 의 서

감사원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환경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등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증명 등</u>	근로자 채용 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u>	근로자 채용 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범죄경력자료</u>	근로자 채용 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국적과 (출입국·외국인청)	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 경력, 단증,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5. .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감사원장 귀하